



2022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장학생(2차) 선발 공고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학업지속이어렵게 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통해 「2022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장학생(2차)」을 아래와 같이선발하오니, 학교 및 해당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22. 8. 8.(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 추진목적

□ 재난·재해·폭력 피해 등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중·고등학생을 신속히 지워하여 학업 지속 장려

2. SOS장학생(2차) 선발개요

- □ 선발인원 : 총 300명 내외
 - ㅇ 학제별 선발인원은 학제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예정

선발구분	선발인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1차	300명 (5월 선발 완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매월 30만 원씩
2차	300명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긴급 구난사유 해당 학생	총 10개월간 장학금 지원 ※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 *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 ※ 사업 잔여 예산 및 별도 재원 확보 등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 변동 가능
- ※ `22년 꿈·재능장학금, SOS장학금(1차)를 신청했으나 미선발된 학생도 신청 가능 (단,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학생의 경우 재신청 불가)

□ 선발절차 및 일정

구분	장학금 신청			
SOS	학교추천			
	(학교별 인원 제한 없음) '22. 8. 16.(화) 09:00			
일정	~ 9. 2.(금) 18:00*			

서류 심사			
제출서류 확인·점검,			
최소 자격요건 심사			
'22. 9월			

	심층 평가
į.	'SOS 장학금 신청서'평가
	및 최종 장학생 확정
1	※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생략
	'22. 9~10월

- * 8. 1.(월) ~ 8. 18.(목)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국 학사일정을 반영하여 2주 순연
- ※ 선발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선발 주요내용 ☞ 유형별 세부 선발·신청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조

구분		SOS장학금					
Á-	HFUI OI	• (2차) 300명(학제별 신청 비율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 배정)					
선발인원		※ 사업 잔여 예산 및 별도 재원 확보 등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국내 중 · 고교 재학생(중2~고3)으로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학생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제외) 긴급구난 사유 해당 학생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 					
선발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 >					
자격	기본요건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학대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풍수해 등 자연·사회재난 포함)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코로나19, 산불피해 등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 곤란 포함)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코로나19, 산불피해 등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포함) 					
추천방식		• 희망자 지원 가능(학교 신청 필요)					
TIQ		• 유형1(학교장 추천) / 유형2(긴급지원대상자) / 유형3(기타 위기상황의 긴급지원 필요자)					
시전	T (3 (3 1)	※ 신청 시 지원유형에 관계없이 세부 긴급구난 사유(① ~⑦) 선택 필수					
		• 신청인 기본정보					
	신청 시	• 신청인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만14세 미만(`08년 이후 출생자) 법정대리인 전원 동의 필수					
제출		• SOS 장학금 신청서					
서류	평가 후	• 긴급구난 증빙서류 ※ 지원유형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학교장 추천서 또는 긴급지원 대상 증명서 또는 긴급구난 증빙서류(7대 사유)					
	※ 대상자 별도 안내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E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심사	서류심사	•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 대상자 입력정보 확인(재단 실무진)					
•	심층평가	• 'SOS장학금 신청서' 기반 평가(SOS 평가단)					
선발	최종 선발	• 심층평가 통과자 중 추가 서류제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 장학생 확정					
장 현(지원방식	학금 지원 식 : 장학금 카드)	• 선발 후 매월 30만 원씩 총 10개월 간 장학금 지원(학제별 균등) ※ 단, 지원기간 중 학업중단, 상급학교 미진학 시 지원 종료					

※ 장학금 신청에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장학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



3.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차 : '22. 8. 16.(화) 9시 ~ '22. 9. 2.(금) 18시까지
 - ※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미완료 시 심사에서 제외)
 - ** 마감일에 임박할 경우, 접속 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천(신청) 진행 필요
 - ※ 단, 모집 상황에 따라 추천(신청) 기한 연장 등 일정 변경 가능
- □ 신청(추천) 방법 ☞ 신청매뉴얼은 붙임 파일 및 홈페이지 참조
 - 소속학교 담당교사*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에 신청(추천) 학생의 기초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 온라인 신청
 - * 신청 대상 학생의 담임교사, 장학 담당교사, 학교 복지사 등

〈 온라인 접수 방법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eduman.kosaf.go.kr) \rightarrow 사용자 등록 및 신청 (교사)* \rightarrow 접속하기 \rightarrow 장학 \rightarrow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rightarrow 장학금 신청관리 \rightarrow '2022년 2학기 1회차' 선택 \rightarrow 신규 \rightarrow SOS장학금 선택 \rightarrow 신청서 작성

※ 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시 교육부 전자서명인증(EPKI)이 필요하며, 사용자 권한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필요

□ 신청(추천) 시 유의사항

- 만 14세 미만 학생('08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 신청(추천)의 경우, 반드시 학생 개인정보동의서(서식 2번) 내 법정대리인 전원의 동의 필요
 - 단, 법정대리인 전원의 서명이 불가한 예외 사항의 경우 공고문 내 '[참고1]SOS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내용 확인
-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와 심층평가 통과 후 추가서류 제출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지원유형과 'SOS장학금 신청서'에 기재된 지원 유형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지원유형 및 사유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완료 시 최종 선정 가능
- 제출서류 미비, 자필서명 누락, 신청기간 미준수, 신청정보 오입력, 허위자료 제출 등은 장학생 선발심사 탈락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의 요망





〈 추천 시 유의사항 〉

- · (사회적 물의)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추천 제외
- *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❷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
- ·(중복신청) 당해연도 꿈·재능 장학금 간 중복신청 불가
 - ※ SOS 장학금(2차)의 경우, '22년 꿈·재능 장학금 탈락 시 신청 가능
- ·(기 수혜자)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불가

4. SOS장학생 지원

□ 장학금 카드(포인트 형식)로 매월 3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
 ※ 지원기간 중 학업 중단 시 학업중단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며, 상급 학년(학교) 미진학 시에는 다음 연도 2월까지 장학금 지원
 □ 장학생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함
 □ 장학금은 생활비가 아닌 학업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주의 필요

* 카드 사용 관련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내 업무처리기준 참조

- 5. 기타사항
 - □ 세부 신청방법은 세부시행계획·업무처리기준 및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어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공지사항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 ㅇ (개별문의) 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질문있어요(온라인상담)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 지워자(학생) 유의사항

- 1. 지원자는 지원자 인적정보, 각종 동의서 및 서류(이하 서식) 등 **지원자 기재사항을** 스스로 작성하고, 지원자 확인 서명을 한 후 관련 자료를 담당 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2.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내려 받거나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글자크기 11, 줄 간격 160%(조정가능)) 또는 자필로 작성하며, 자필로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십시오.

〈참고: 만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관련〉

- □ 만 14세 미만 학생('08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을 추천하는 경우, 학생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에 법정 대리인 전원의 서명 필수
- (예외1) 법정대리인 전원의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사망, 이혼, 장기 부재(연락두절, 행방불명 등) 등
 - ⇒ 공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u>한부모가족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학생 본인 기준 발급, 친</u>권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친권자인 부 또는 모 기준 발급, 사망, 이혼에 의한 친권자 기재),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중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1종 서류 필수 첨부**
- (예외2) 법정대리인이 조손 가정인 경우
 - 부모가 모두 부재(사망 등)하여 조부모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 ⇒ 공적으로 증빙될 수 있는 <u>조부 또는 조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1부</u> + <u>학생 본인 명의</u> 가족관계증명서 1부(총 2부) 서류 필수 첨부
- ※ 만 14세 미만 학생의 법정대리인 전원의 서명이 불가한 경우, 재단 측에 문의 필요

■ 담당교사 유의사항

- 1. 지원자가 지원자 기재사항 및 지원자 확인 서약란을 빠짐없이 기입하였는지 확인 하여 주십시오.
- 2. 담당 교사는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 3. SOS 장학금 신청서(서식 6)는 지원 자격의 판단 자료이므로 긴급구난 사유 유형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유형1(학교장 추천)의 경우 확인란에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십시오.
- 4. 심충평가 통과 후 제출하는 학교장 추천서(서식 7)는 지원 자격의 판단 자료이므로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학교장 추천 사유 기재 및 날인해 주십시오.
- 5. 심충평가 통과 후 제출하는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확인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 ※ 동 자료는 장학생 선발 후 장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됩니다.





SOS 장학금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 시 제출서류와 심층평가 통과 후 제출서류를 구분하며, 반드시 기한 내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	1	1 신청인 기본정보 학생		학생 기본정보(<u>시스템 입력사항, 제출 불필요</u>) ※ 담당교사는 기본정보 시스템 입력 후 해당 서류는 제출 불필요(학교 보관)	서식1
시 제출 서류	2	〈학생〉 2 개인정보동의서 및 학생 신청인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 <u>만 14세 미만</u> 은 <u>법정대리인 서명 필수</u>	서식2
	3	SOS 장학금 신청서 학생		긴급한 위기상황 및 학업의지 · 계획 구체적 서술	서식6
	(1	긴급구난 증빙서류	학생	학교장 추천서	서식7
				긴급지원 대상 증명서(참고7 참조)	행정복지 센터
심층 평가 통과 후 제출 서류*		(택 1)		긴급구난 증빙서류(7대 사유*) 중 택 1 ★ ① 사망·수용, ② 중증질병 등, ③ 방임·유기·학대, ④ 가정 폭력·성폭력, ⑤ 화재·재해, ⑥ 영업 곤란, ⑦ 실직 등	하단의 표 참고
	5 기급계 6 8 시 대리인		법정 대리인 (부모)	긴급구난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학생 본인 외 타인(부모 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행정복지 센터
	6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 원본대조필 포함	소속 학교

*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반드시 기한 내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 긴급구난 증빙서류(7대 사유) - 상세내용은 [참고 4] 참조>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주소득자 사망/행방불명/가출/수용 증명서 중 택 1
 - 주소득자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 중증질병/부상 진단서 중 택 1
 - 가구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방임/유기/학대 증빙서류 중 택 1
 - 가구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증빙서류
-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 거주지의 화재/재해 증명서 중 택 1
 - 거주지 증빙서류(주민등록주소 등본 등)
-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 증명서 중 택 1 또는 영업곤란 증빙서류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증명서 또는 소득 상실 증빙서류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학자금지원시스템 신청 방법

[학자금지원시스템 장학금 신청(추천) 방법]

- 사용자 등록 신청 (담당교사→재단)
 - (EPKI 기보유자)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권한 신청



- ①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https://eduman.kosaf.go.kr)
- 2 사용자 등록 및 신청 클릭 → 개인정보 기입 후 권한 신청
- 3 입력된 정보 확인 후, 재단 담당자는 신청 권한 승인
 - ※ 학교명, 권한 분류 등을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요망
- ※ 신청시스템 접속 및 사용 매뉴얼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
- **(EPKI 미보유자)** 담당교사는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https://www.epki.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 필요
- ※ (접속경로)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 인증서발급/관리 > 신청절차 안내 참고
- ② 신청서류 준비 (학생→담당교사)
 - 신청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학교 담당 교사에게 신청서류 제출 및 기재사항 점검

<u>신청 시</u> 학생 제출서류

- **1** 신청인 기본정보(온라인 입력사항)
- 2 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
- 3 SOS 장학금 신청서
 - ※ 만 14세 미만('08년 이후 출생자 중 생일 미도래자)은 법정 대리인 전원 동의 필요
- ③ 학자금지원시스템 정보 입력·서류 제출 (담당교사→재단)
 - 담당교사는 신청인 기본정보 등을 입력하고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업로드
 - ♠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①에서 권한 승인 받은 경우에만 로그인 가능)
 - ② 하단의 접속경로를 따라 신청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 신청시스템 접속 및 사용 매뉴얼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재단 홈페이지 게시)

<u>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경로</u> ▶ 장학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장학금 신청관리 > '2022년 2학기 1회차' > 신규 선택 > SOS 장학금 선택 후 확인 > 신청서 작성

※ 권한 신청에서 재단 담당자 승인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u>행정전자서명인증 또는</u> 권한 승인 절차 사전준비 필요





신청 관련 서식

서식1

신청인 기본 정보(온라인 입력)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인 기본정보

	이	름					성 별			남	/ (Й	
	주민등록	루번호	(9 14 020401-31	23456)									
	학교 및	학년			학교		학년			반			
신청 기초	학생연	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정보	보호: 연락 /		(관계:)		보호자 (관계: 연락처2)				
	집 주	소	(우편번호:)								
	학교 3	주 소	(우편번호:)										
	보호자 정보 (부·모 ·법정대리인)		관계		성명		생년월	일		동거여부/ 비동거 시 사유			
꿈·													
재능	타기관 지원현황		지원기관	<u> </u>	장학금명칭		금	금액(원)		지원	기간(학기단	단위)	
	(이중수혜 확인용) 소득구분												
			 □ 기초생활:	 스근자		버전	차상위가	<u></u> 전		하브대	ᄀ가ᅎᄂ	ᆸᆼ대산지	
	지원유형		☐ 유형1(학교 [·]				□ 유형2(긴급지원 대상자)		Α]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유형3 (기타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 필			
sos		비고	즉시 긴급지원이 학교장 추천을 빈	필요한 ³ 는 자			지지원법」에 임대상자로 선 당고일부터 증당	-01		7대 긴 (개별신		나유 해당자	
		미꼬	① 주소득자 사밍 ⑤ 거주지 화재/자								ᅾ·성폭력		

[※] 학생은 위 내용을 작성 후 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교사는 위 내용을 재단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2

개인(신용)정보 수집())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학생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초·중등·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초·중등·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복학 재입학, 편입 휴학 등 포함)을 위한 신청, 장학금 계속 지원 확인,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는데 동의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2에 따라 재단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확인, 장학대상자 선발지원관리 등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및 제50조의4 자료 요구 및 질문을 위한 업무 수행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등)의 시행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공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보유·이용 기간	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등록금 정보, 초·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학자금 지원정보, 학생기록부 정보(내신정보, 학생부정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학생 계좌정보, 보호자 정보등), 졸업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에 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u>제공·조회</u> 대상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교육청 등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금융회사(은행, 카드사) 등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복꿈 성장 멘토링(1:1멘토링) 담당 멘토 업무위탁업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 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진로 컨설팅 대행업체, 멘토링 캠프(콘서트) 수행(대행)업체 및 관련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UCC 심사 관련 사이트 구축-운영업체 등 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시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2 자료 제출의 요청, 제50조의4 자료 요구 및 질문 등을 위한 업무 수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진로 컨설팅 업무, 멘토링 캠프(콘서트) 운영, 장학증서 수여식 운영, 조사·연구, 상담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소속,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자금지원정보 ▶ 장학금(재단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등록금 정보, 초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학생기록부 정보(내신정보, 학생부정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등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u>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u>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등 동의하지 않음 등)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 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 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 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등

-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 o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mark>(동의함 □</mark>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해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귀 재단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 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 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포함),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 서(본인 및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등
-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며, 본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아래의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법정대리인 미동의 시 장학생 선발에 제한, 법정대리인이 부모일 경우 부모의 서명 모두 필요)

동의자(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동의자(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4. 신청인 동의서(학생)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 ① 본인은 최상의 학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② 본인은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③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신청불가)로서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만약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 ④ 본인은 학교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⑤ 본인은 장학생으로서 기타 재단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⑥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활동보고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 본인은 장학금 카드가 학업장려비로 지원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반드시 생활비 목적이 아닌 학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의 부정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 · 본인은 국가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대학생 진학 시 중고교생 장학생을 위한 멘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장학금 지원 제한 및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 ① 본인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시행 계획상 장학생 자격 박탈, 중단, 유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장학생 자격이 변동됨에 동의합니다.
- ②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 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 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 다. 장학재단법, 학자금상환법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동의서 및 신청인 동	의서 상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전부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2 Id	월 일	l 학생 성명 :	(서명	🤅 또는 인
2022 년	4 =	9 연 연령 :	$(\land) \supset$, 또는 건

※ 동의 절차 미완료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최종 선발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모든 내용을 확인 후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6

(SOS 장학금) SOS 장학금 신청서

SOS 장학금 신청서

□ 학생 기본정보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별	남 , 여
소속 학교	(시/도)		(시/군/구)			ठॅ	교
학 년			반				

□ 긴급구난 사유 유형 선택

- 1 등 3개의 지원유형 중 1개만 선택
- ② '유형 3' 선택 시에는 긴급구난 세부 사유(①~⑦)를 선택하여야 하며, 장학생 예비합격자는 기한 내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지원유형(택 1)	긴급구난 사유(신청일 기준 위기상황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	증빙서류	
□ 유형1(학교장 추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유형3 ①~⑦에 해당)가 발생한 자로서, 학교장 판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서식7 참조	
□ 유형2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참고7 참조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맹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참고6 참조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유형3*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학교장 추천 및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아니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청자는 학교에 개별 신청 필수

□ 학교장 추천

학교장 확인	 학교장(직인)
1	

- ※ 유형1을 선택하신 경우, 반드시 확인란에 날인을 찍어 제출 바랍니다.
 - 유형1의 경우 학교장 직인은 필수 사항이며, 누락 시에는 서류 심사단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전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등

1. 평가안내

- 평가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성명, 지역, 소속 학교명 등)를 사전에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고 신청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 SOS 평가단(교원, 복지·인재개발전문가, 입학사정관 등)이 평가를 하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긴급지원의 중요성, 학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2. 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자는 블라인드 평가임을 유의하시어, 「SOS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성명, 지역, 소속 학교명 등)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OS장학금 신청서」는 <u>총 2페이지 이내</u>로 <u>반드시 장학금 신청자 본인(학생)이 직접 작성</u>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허위 또는 과장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허위작성 등 기재 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양식을 변경하거나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신청 정보 오입력, 허위입력 등에 따른 정보 불일치 시 심사 탈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OS장학금은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 긴급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서류심사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 이후 예비 합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재단에서 안내한 기한 내 추가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서류미비 및 누락 포함)시에는 장학생 최종 선발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한 내 미제출 시 후순위자에게 추가 서류제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 ※ 추가 서류제출 및 기타 안내는 신청 시 시스템에 입력하신 연락처를 기준으로 진행되오니, 신청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학생)에게 있습니다.

부정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선발 이후라도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며, 향후 장학생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 법적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 2쪽 이내로 작성하며, 문항별 작성 분량은 제한 없음

1. 본인이 처한 위기사항, 긴급한 정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 학업계획, 향후 진로 및 비전 등과 함께 향후 장학생으로서의 학업 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7

(SOS 장학금) 학교장 추천서

학교장 추천서

지원 학생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 여
소속 학교	(시/도)		(시/군/구	-)		ŏ	। ज
학년			반				

	긴급	ユュ	사유	유형
ш	신법	Tゼ	$\gamma_{\Gamma} T T$	π 8

- ※ (작성 시 설명 문구 삭제)
- 하단의 긴급구난 세부 사유(①~⑦) 중 해당되는 유형 택 1하여 기재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 긴급구난 사유에 따라 20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유형 장학생으로 상기 학생을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직인	<u>]</u>))
--------	------------	---

- ※ 학교장 추천서 기재내용과 실제 시스템에 입력된 지원사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 제출 시에는 반드시 소속 학교의 학교장 직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SOS 장학금 신청 FAO

1.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사유①~①번에 해당이 되나, 제출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긴급구난사유에 해당되나 기한 내 제출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 유형 1(학교장 추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원유형 1로 신청한 경우 추후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학교장추천서 (서식 7)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지원유형2에 해당되는 '긴급지원대상자'란 무엇인가요?

긴급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해당 대상자가 맞는지 사전 확인하신 후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유형1, 2도 신청 시 긴급구난사유를 꼭 선택해야 하나요?

해당 부분은 2차 신청부터 변경되었으며, 따라서 지원유형에 관계없이 시스템에 세부 긴급구난 사유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세부 긴급구난 사유 선택 필수 안내 >

※ SOS장학급(2차) 신청 시 지원유형에 관계없이 세부 긴급구난 사유 택 1 필수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 >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학대
-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 ⑤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풍수해 등 자연·사회재난 포함)
-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코로나19, 산불피해 등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 곤란 포함)
-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코로나19, 산불피해 등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포함)

4. SOS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총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하는데, 2페이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SOS장학금 신청서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정보 페이지,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등, 1-2번 문항 작성 페이지
- 이 중 기본정보,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을 제외한 1-2번 문항 전체를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주 시면 됩니다. 문항별 작성 분량은 제한이 없으나 단,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가 안내 및 유의사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학생의 본인 서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인쇄하여 서명 후 다시 스캔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빈 종이에 서명한 것을 파일에 그림으로 삽입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명만 타이핑하여 입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SOS장학금 신청서에 있는 기본정보는 꼭 작성하여야 하나요?

SOS장학금 신청서 첫 페이지에 있는 기본정보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신청하는 학생의 성명, 반, 주소 등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제출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본정보와 별개로, 평가를 위한 1~2번 문항에는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정보 페이지 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밝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구난 사유에 따른 제출서류 (유형3에 해당)

긴급구난사유	제출서류 안내	발급처
① 주소득자(主 所得者)의 사망/ 가출/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사망-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사망일자 확인) ・가출 및 행방불명- 행방불명·가출·실종 신고 접수증 ・구금시설 수용-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신청일 기준) - 수용증명서, 치료감호증명서 등	・사망진단서: 해당 병원 문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정부24(온라인) ・기출 실종 등 신고 접수증. 경찰서방문) ・수용증명서: 형사사법포털(온라인) ・치료감호증명서: 법무부민원서비스
②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의 중증 질병 및 부상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질병, 암질환, 희귀난치질환 포함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및 「국민건강보험법」 산정 특례제도에 따른 대상질환 (helpline.kdca.go.kr내 희귀질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참조)	• 진단서, 입원확인서: 해당 병원 ※ 상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③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유기/ 학대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 입소 증빙서류 •전국 아동학대 관련 시설 입소 증빙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시설입소 관련 서류: 해당 시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방문)
④ 기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기정 생활 곤란		・시설입소 관련 서류: 해당 시설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 센터 문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방문)
③ 거주지의 화재 /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	・거주지의 화재/재해— 화재증명원, 피해사실확인서 등 ・거주지 증빙서류(주민등록주소 등본 등)	• 회재증명완정부24(온라인), 소방서(방문) • 재해 피해사실확인서: 각 지자체(방문)
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副所得 者)의 휴업/폐업 /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 증명서 중 택 1 -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신청일 기준) - 휴업사실증명서, 폐업 증명서 - 화재증명원, 피해사실확인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영업곤란 증빙서류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포함 * 무급휴직: 1개월 이상 지속 중인 자 	- 휴업사실증명서, 폐업증명서: 정부 24(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세무서 - 화재증명원: 정부24(온라인), 소방 서(방문) - 재해 피해사실확인서: 각 지자체 (방문)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각 지자체 (방문) ※ 영업곤란(소득감소) 증빙서류





긴급구난사유	제출서류 안내	발급처
	 ▶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긴급복지지원제도 서식5-1호) * 자영업자: 25% 소득감소 ▶ 자영업자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 연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매출액 감소증빙서류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국세청 홈텍스)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핸드폰 사진, 화면캡쳐, 인쇄물 등) ·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 관련 서류 · 수출실적 증명서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25% 소득감소 ▶ 노무제공 확인가능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소득감소: 사업주가 발급한 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 신청일 전월의 소득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20년도 동월 또는 '21년 동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등 	* 무급휴직 ①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서식5-1호) * 자영업자 -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기관 문의 * 특고·프리랜서 -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기관 문의
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인한 소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유선, 온라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유선, 온라인)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일용 근로내역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온라인)
* 공통 적용 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단,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중증질병 및 부상 증빙서 발급된 서류까지 유효하게 인정하며, 사망진단서, 법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가구원, 거주지 확원 ※ 상기 서류 외 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전 ※ '제출서류 안내 및 발급처'를 참고하여 긴급구난 사유 후 제출	원판결문은 발급일자와 관계없이 인정 인 필요 시 요청) 제출 가능

- ※ SOS 장학금의 유형3으로 신청 시 <u>반드시 본인의 긴급구난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유형 변경 불가</u>
- ※ 긴급구난 사유에 해당하는 <u>증빙자료 등을 기한 내 미제출 시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이</u> 불가하며, 차순위 대상자에게 기회 부여





긴급지원대상 증명서(예시)

제	<u>□</u>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2.	. 세대주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						
3.	. 주소(소재지) :						
4.	. 건급지원 종류 구 분 :						
	[] 생계지원 대상자 [] 의료지원 대상자 [] 주거지원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 [] 교육지원 대상자 [] 그 밖의 지원()	원					
5.	.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유	우의사항: 목적의 사용 금지						

210m×297m[인쇄용지(독급) 120g/㎡]

※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의 경우,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